##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54

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:윤준병・박민규・조계원

정동영 · 황명선 · 강준현

안호영 · 김문수 · 민병덕

신영대 · 김태선 · 문정복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한민국헌법」 제65조에 따라 대통령·국무총리·국무위원·행정각부의 장·헌법재판소 재판관·법관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 감사원장·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에 따라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, 원자력안전위원장,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.

이와 관련,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수행의 객관성·중립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,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권을 남 용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 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실정임. 이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처장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대통령경호처장 등) ① ~	제3조(대통령경호처장 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처장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
	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
	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
	의결할 수 있다.